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83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 한병도 • 양부남 • 김영배

이해식 • 박용갑 • 이원택

정태호 • 위성곤 • 신정훈

윤건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해당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

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u>당하는 사람</u>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u><단서 삭제></u>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	
<u>나 졸업예정인 사람</u> 을 이전공	
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	
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	
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	
여야 한다. <u>다만, 이전지역에서</u>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제외한다.

<신 설>

<신 설>

- 1. 해당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 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 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다만, 이전지역에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지역에서「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제외한다.

<u><신 설></u>	3.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
	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
	업하고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
	종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하
	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